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9. 23. 김문수의원 등 16인

나. 회부일자 : 2025. 9. 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5.11.26.) :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5.11.26.) :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25.11.27) :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3.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문수의원)

현행법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진로 선택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일정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출 시점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졸업 후 2년 동안은 연간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기준 중위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재학 중에도 이자가 면제되지 않고,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자금을 대출했던 학생 상당수는 졸업 시점에서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임. 청년층이 사회 진출 초기부터 채무부담을 지는 이러한 사회구조는 주거, 취업, 결혼 등 생애주기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이러한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이자 면제 기간 또한 저소득층이나 다가구 자녀 등의 경우와 같이 재학 중 기간을 포함하고 졸업 후 2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청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제5호 신설 및 제3항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최선영)

□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는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소득분위별로 구분하여 ①기초·차상위 구간에 대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상환기준소득 발생 전까지의 이자를 면제하고 있으나,

②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는 상환기준소득이 발생하기 전의 이자는 면제하되,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2년을 초과한 경우는 소득 발생과 관계없이 이자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즉, 기초·차상위 계층 등이 아닌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한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득이 없는 경우 대출금의 상환 자체는 유예되지만, 이자는 납부 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는 바, 개정안은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음.

□ 현재 학생들은 소득구간별로 국가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등록금과 국가장학금의 차액만큼을 학자금 대출로 충당하고 있으며, 그 차액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면제받고 있음.

그런데 대출자가 상환기준소득인 2,851만원을 초과하여 상환을 개시하는 시점이 졸업 후 평균 3년으로 조사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취업을 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짐.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고민정)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여 대안반영 폐기 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